



의안번호	제49호
------	------

<p><b>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b></p>
--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18. 7. 12.

# 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9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7. 12.  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「농어촌정비법」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있음.
-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10조의2 (지원범위)를 신설하여 지원내용을 정비함.(안 제10조의 2)
- 나. 제15조제1항제2호 중 “지정”을 “지정 및 지구단위사업구역”으로 개정함.(안 제15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(2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(3) 규제 심사 : 해당 없음

(4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8. 02. 22. ~ 2018. 03. 14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(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(6) 충청남도 소관 실과 : 농촌마을지원과

## 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# 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후단 중 “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를 “요청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지원범위) 시장은 수리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용·배수로 등의 수리시설 장비, 준설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
2. 양수장, 관정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농업용수 관련 시설의 전기요금 및 유지·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
3. 그 밖에 수리계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제15조제1항제2호 중 “지정”을 “지정 및 지구단위사업구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	희망마을건설과장	박 찬 택
안	희망마을 팀장	김 영 천 (746-6181)
자	담 당 자	홍 도 균 (746-6185)



처 수리계를 해산 할 수 있다.  
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 
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(생략)

2. 수혜지역이 「국토의 계획  
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  
른 용도지역·지구의 지정 또  
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 
한 법률」에 따른 단지의 조  
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  
조제2항제2호의 수리계의 조  
직기준에 미달되게 된 때

3. (생략)

② (생략)

-----.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 
-----  
----- 지정 및  
지구단위사업구역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해당 없음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나. 추계결과

3. 작성자

**희망마을건설과장 박찬택**

## ○ 지방자치법

**제22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○ 농어촌정비법

**제126조(수리계)제2항**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○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

**제63조(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)**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1호의 조직 기준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.

## 1. 수리계의 조직 기준

가.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

나.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

## 2. 수리계의 경비부과 기준

가. 운영경비: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비·관리비 전액

나. 손괴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복구비: 필요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

다.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: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 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

## 3. 수리계의 해산 기준

가. 수혜지역이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

나. 수혜지역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

다.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수·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

## 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**제51조(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)**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4.14., 2011.5.30., 2011.8.4., 2013.3.23., 2013.7.16., 2016.1.19., 2017.2.8.>

1.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
2.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
3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
4.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
5.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
6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
7.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
8. 개발제한구역·도시자연공원구역·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, 녹지지역에서 주거·상업·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
  - 8의2. 도시지역 내 주거·상업·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
  - 8의3.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, 군사시설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,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
9. 도시지역의 체계적·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
10.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